

## 4.3.6 논문집투고및발간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9. 09. 07.

개정 2019. 07.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투고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논문집의 투고자격은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겸임교원과 강사에 한 한다. <개정 2019.07.16.>

제3조(주관) 논문집의 발간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되 이를 위하여 논문집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의 심사 및 편수의 결정
2. 논문의 게재 결정
3. 논문의 편집
4.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투고논문) 발간횟수는 연1회로하며,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타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는 논문으로서 1인 1편에 한 한다.

제9조(논문의 접수) 논문은 매년 9월말에 접수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논문집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논문의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은 인문사회과학부문과 자연과학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으로 하되, 편집상 다소 전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제12조(교정) 논문의 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원고 제출자는 초교와 최종교정을 보아야 한다.

제13조(별쇄) 논문집의 별쇄는 20부로 하되, 이를 초과할 때는 원고제출시 희망 부수를 표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원고의 양) 원고의 양은 자연과학부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삽화, 도표 포함), 인문사회과학부문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논문기고) 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어, 독어, 일어 중 하나로 하며, 국문일 때는 제목, 저자 및 내용요약을 해당 외국어로 또는 외국어일 때는 국문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논문의 체제) 논문은 표제(부제포함), 필자사항(성명, 소속학부(과)), 초록(요약),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

다.

제17조(용어) 논문이 국문인 경우 학술어, 고유명사, 인용문을 제외하고 국문으로 표기한다.

제18조(원고작성) 논문집의 체제를 통일하고 편집상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1. 원고는 횡서로 하고, 구문(歐文)은 워드프로세싱(1매당 60자×25행)하여야 한다.
2. 삽화, 도표는 흑백사진 또는 목서로 하고 각각 그림1, 그림2, ... 표1, 표2, ...등으로 정확·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그림과 표는 일괄적으로 원고 끝면에 별첨하고 그 본문 중에는 그 위치만 원고좌측에 표시해야한다.
4. 초록(요약)은 국문은 600~800자, 영문은 200~300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5. 원고에서 수식은  $5/7$ ,  $a/(b+c)$  등과 같이 표기하고, 혼동하기 쉬운 글자(희랍어  $\alpha, \gamma$ )등은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고, 모든 단위는 MK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논문 중 동일 물명에 대하여는 국문과 구문(歐文)의 혼용을 금한다.
8. 순번 기호는 I, 1, (1), ①의 순서로 한다.
9. 인용 및 참고문헌의 색인번호를 본문의 인용처에 반드시 기입하고 인용문헌의 기입순서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서로 한다.
  - 가.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책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페이지
  - 나.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호) 출판연도, 인용페이지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